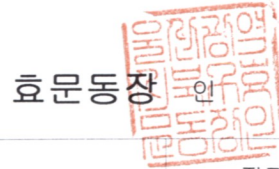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19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재	이 *재 1964-04-10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5길 (명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8-19